

부산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431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로

담당변호사 이은수, 최종석

피고, 항소인 1. 의료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재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0. 27.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11462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 의료법인 B과 E 사이에 2017. 4.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 의료법인 B은 E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4. 18. 접수 제20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 C과 E 사이에 2019. 2.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 C은 E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27. 접수 제74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 C과 E 사이에 2019. 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2) 주위적으로, E에게 피고 C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22. 접수 제85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추심금 채권

- 1) 건축재료 도소매업, 타일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721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9. 'F은 원고에게 217,624,39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7. 8.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7. 9. 28.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13813호로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E로 하여, F이 E에 대하여 갖고 있는 ‘부산 사상구 G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 중 ①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9640호로 가압류되어 있는 217,624,391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② 이 사건 판결에 따른 2017. 4. 12.부터 2017. 9. 21.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합하여 14,945,153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0. 11. 위 신청 내용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10. 16. E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7. 12. 7.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860호로 추심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20. 7. 22. 위 법원으로부터 ‘E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8. 13. 확정되었다.

나. E의 처분행위

1) E는 2017. 4. 5.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의료법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의료법인 앞으로 제1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4. 18. 접수 제20560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2) E는 2019. 2. 26.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 앞으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27. 접수 제7457호로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3) E는 2019. 2. 18.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 앞으로 제3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22. 접수 제8522호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그 후 피고 C은 2019. 10. 7.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제3부동산을 매도하고, 위 D 앞으로 제3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9. 접수 제54704호로 201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5 내지 7호증, 을가 제10, 11호증의 각 1, 을나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F의 E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추심권능을 부여받은 추심채권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제3채무자인 E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의 결과 E에 대하여 위 추심금 소송의 소송비용액상환채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① F의 E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제1, 2매매계약 이전에 존재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② 위 소송비용액상환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9640호 가압류에 기하여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추심금 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런데 E에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채무를 부담함에도, 피고 의료법인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피고 C과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주요하거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으므로, 원고는 ① 피고 의료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제1부동산의 원물반환을 구하고, ②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관하여는 위 제1매매계약의 취소와 제2부동산의 원물반환을 구하며,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관하여는 주위적으로는 위 제2매매계약의 취소와 제3부동산의 원물반환을, 예비적으로는 제3부동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위 제2매매계약을 210,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2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중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즉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피고가 위 소송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공탁함으로써 변제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의 소송비용액상환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제1, 2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던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제1, 2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먼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이 사건 추심금 소송에서 'E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20. 8. 13.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한편, 을가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 8. 10. 부산지방법원 2022년 금제3481호로 이 사건 추심금 소송에 따른 판결원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0,665,753원(= 140,000,000원 × 533일/365일 × 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9. 6. 1.부터 공탁일인 2022. 8. 1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3,667,945원(= 140,000,000원 × 1167일/365일 × 12%)을 더한 84,333,698원을 압류 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집행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F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의 소송비용액상환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고), 위 소송비용액상환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제1, 2매매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본안사건인 이 사건 추심금 소송도 제기되지 않았거나(이 사건 증여계약 기준) 소송계속 중(제1, 2매매계약 기준)이었을 뿐 판결이 선고 또는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제1, 2매매계약 이전에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9640호로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 당시 소송비용액상환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거나 그 판결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 그 액수가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의 소송비용액상환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제1, 2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안혜미, 판사 허성민

별지

목 록

1. 부산 사상구 S 대 672㎡
2. 부산 사상구 T 임야 793㎡ 중 25,650/79,300지분
3. (1동의 건물의 표시)

양산시 U, V, W, X, Y, Z에 있는 AA건물 AB동

철근 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294.62㎡, 2층 294.62㎡, 지하1층 205.1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양산시 U 대 7,151㎡
2. 양산시 V 대 9,423㎡
3. 양산시 W 대 11,734㎡
4. 양산시 X 824㎡
5. 양산시 AC 대 346㎡
6. 양산시 Z 대 98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AD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45.535㎡

(대지권의 표시)

- 1, 2, 3, 4, 5, 6 소유권대지권 304,580,000분의 2,265,000. 끝.

1)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